

수사·기소 분리의 절차법적 완결: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1. 배경 설명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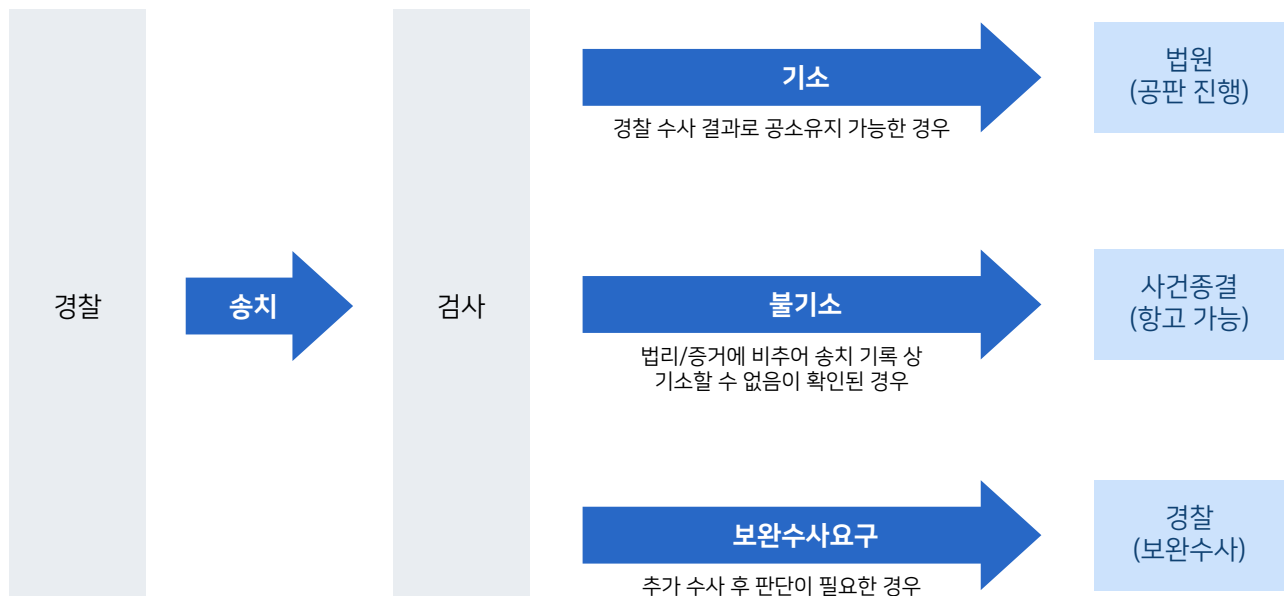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7월 9일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219875)을 포함하여 제출된 총 10건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심사하여 단일한 법제사법위원장 안(이하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2026년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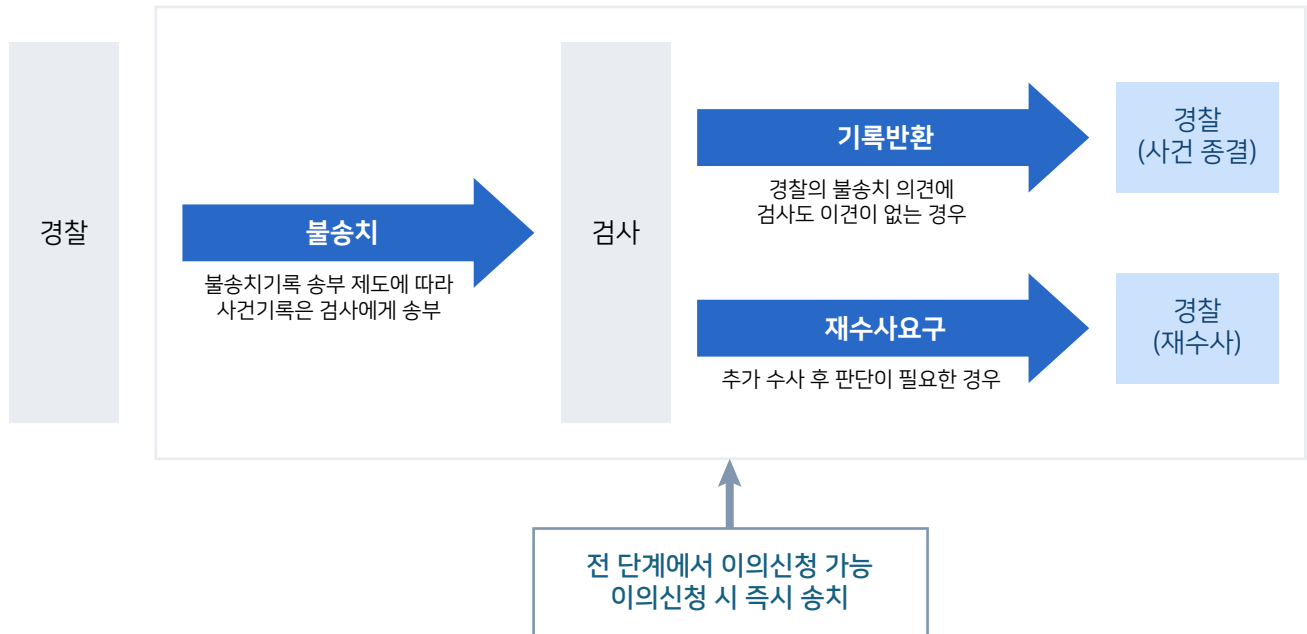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되,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관리 절차를 법률화하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제도(제245조의13)를 신설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고, 실무 상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들을 Q&A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른 형사 절차 개요도(경찰 수사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인 경우 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



<경찰이 혐의없음 등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경우>



3.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검사의 직접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 권한 전면 폐지

- **검사의 수사 조항 삭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권한)를 삭제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의 근거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종래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하였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수사는 경찰 및 올해 10월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개시와 진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 **직접 보완수사 금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물론,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사건 송치(제197조의3 제6항 후단)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 송치(제245조의7 제4항) 시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고(종전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송치 관서 또는 상급 수사관서 내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8항).
- **검사 의견 요청 제도의 도입:**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95조 제3항). 수사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경찰에 제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 제도의 보완과 기한 신설

- **검사의 보완수사 이행여부 관리 의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97조의2 제2항), 보완수사 요구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검사가 관리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제3항). 다만, 구체적으로 검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완수사 기한 신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제197조의2 제4항, 제6항). 종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도 경찰의 사건 적체로 인해 3개월의 보완수사 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위 단축된 보완수사 기간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보완수사 관서 지정 요구권:** 특정 수사관서에서 적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8항).
- **'재수사요청' 용어의 변경과 추가 재수사요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이 '재수사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1회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를 송부한 이후 필요 시 한 번 더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45조의8 제7항). 개정안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재수사요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안 제안 이유에 '1차에 한하여 다시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사건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청의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재수사요구가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검사의 재수사요구 기한과 경찰의 재수사 기한 명시:** 검사는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가 유지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차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요구하여야 한다는 기한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5조의8 제7항). 그리고 재수사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재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기한 또한 명시되었습니다(제245조의8 제4항).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제도>

구분	근거규정	대상사건	요구 기한	수사 기한	불이행시 조치	비고
보완수사 요구	제197조의2	송치사건 (이의신청, 시정조치 요구에 따른 송치 포함) 영장신청 사건	없음	1개월(사건 긴급성등 고려하여, 필요 시 검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 횟수 제한 없음)	각급 공소청의 장이 사법경찰 관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송치 관서 뿐만 아니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 요구 가능
재수사 요구	제245조의8	불송치 사건	불송치기록 송부일로 부터 3개월 이내(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 가능)	3개월(사건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검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기한 연장 규정 없음	각급 공소청의 장이 사법경찰 관에 대해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재수사결과 송부 후 필요 시 추가 재수사 요구 1회 가능 송치 관서 뿐만 아니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 요구 가능
시정조치 요구	제197조의3	사법경찰 수사 중 사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신고 내지 인식한 때	지체없이 이행	송치요구 또는 타 수사기관 이송 요구	송치 후에는 송치관서 뿐만 아니라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 요구 가능

다. 불복 절차 제도 정비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 **고발인에 대한 제한적 인정:** 현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던 고발인을 제한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종래의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 **3개월의 이의신청 기한 신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종래 이의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함으로 인해 불송치 사건의 피의자들이 장기간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는 사정을 개선하였습니다.
- **불송치 이의신청을 위한 기록 확보:**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이하 '고소인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종래 간략한 불송치 결정서에 의존해 불복 논리를 구성해야 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수사 기록 자체를 분석하여 법리적 오류와 증거 누락을 지적하는 고도화된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기록을 열람·등사한 자가 이를 목적 외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생활 평온을 해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 규정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2)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및 재항고:** 공소청법은 현행 검찰청법과 유사하게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또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광역공소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 **고발 사건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 대폭 확대:** 종래 고발인에 의한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형법 제123조~제126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약자 대상 범죄 및 주요 강력범죄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신고의무가 있는 고발인도 재정신청 주체로 추가하여 그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제260조 제1항 각 호). 신설된 고발인 재정신청 대상 범죄는 가정폭력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입니다.

다만,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법률에 따르면 송치관서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현행 형사소송법이 정하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을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상호 협력하여야 할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제245조의10 제2항). 공소청법이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를 삭제하였으므로(공소청법 제4조) 그에 일관하도록 형사소송법도 개정된 것이며, 이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준용되지 않던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 관련 규정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제245조의10 제6항). 다만, 기소 의견 사건만 송치하는 사법경찰관과 달리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기소, 불기소 의견 사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요청권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제245조의10 제2항 후단),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지도,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45조의10 제3항).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의견 제시와 유사한 제도로 보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의 형사사법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지도, 조언'으로 협력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 수사 절차에서의 녹음·녹화제도 신설 및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1)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의무화 (제220조의2)

- **원칙적 영상녹화 의무:** 사법경찰관이 영장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바디캠 포함)로 촬영·녹화하여야 합니다.
- **열람·등사 신청권:**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및 압수·수색·검증을 받은 자는 수사기관에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전자기록 포렌식이나 집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장 범위 초과 압수, 변호인 참여권 침해 등 위법수사 여부를 영상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집행 현장 대응과 영상기록 열람·등사를 통한 준항고(제417조) 및 증거능력 배제 변론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2) 피의자신문 및 조사·면담 시 녹음제도 신설 (제244조의6)

- **신문 전 과정 녹음 가능 및 피의자 등 요청 시 진술녹음 의무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는 피의자신문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되, 명칭을 불문하고(조사, 면담 등)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개시 전 선제적으로 '진술 녹음'을 요청함으로써, 조서 작성 전 행해지던 비공식 면담이나 회유·압박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제245조의11)

- **이의제기 사유:** 고소인·피해자 등(고소인등)은 ①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수사 지연), ② 사법경찰관리가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③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사관서 장의 14일 내 조치 의무:**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상급관서 심사 신청(2단계 불복):** 수사관서 장의 조치가 없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 면담 신청권 (제245조의13)

-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피의자,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 및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소인등의 검사 면담 신청권:** 고소인, 고발인 및 피해자는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된 구조에서, 공소청 검사와의 직접 면담 및 서면 제출을 통해, 피의자 측 변호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대리인로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변론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4. 결어: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 및 대응

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절차법적 완결에 그 목적을 두고, 공소청 검사의 역할은 사후적인 공소 제기·유지 및 서면 중심의 사법 통제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형사 변론에 있어 경찰 단계 변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수사는 직접수사 뿐만 아니라 송치 이후의 직접 보완수사까지 차단되는 만큼, 초기 사법경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 여부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의견 요청, 이의제기권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절차의 활용 또한 경찰 수사 대응 방안으로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및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절차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보완수사 및 재수사요구, 고소인등 면담,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여러 제도가 보강 또는 도입되었고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검사의 몫이므로 이와 관련한 공소청 변론은 여전히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 지위가 회복됨과 동시에 3개월이라는 엄격한 이의신청 기한이 신설되었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경찰의 처리 시한 역시 1개월로 명시되는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시간적 제약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송치 통지 수령 즉시 지체 없이 불복 논리를 수립하는 신속함이 요구되며, 실무 기한 관리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절차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실무 Q&A

Q1.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수 없게 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조항(제196조)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등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송치 사건(제197조의3제6항 후단)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송치 사건(제245조의7제4항) 시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사 목적의 피의자·참고인 '소환조사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은 금지되지만, 신설된 제245조의13(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인등 면담)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 때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 참여 등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비록 그 면담 결과 등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하나,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참고인,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서면 자료 제출을 받거나 직접 면담을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제245조의13 절차를 활용한 검사 직접 면담 및 서면 제출을 통한 변론이 주요 기회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01조 제7항), 피의자 면담에 대해서는 변호인 참여 등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201조 제8항).

Q2. 증거 수집 목적이 아니라 수사 절차 상 위법 사항의 존부, 구형량 결정을 위한 양형 인자 파악 등을 위해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면담하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신설된 제245조의13 제1항이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 참고인,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절차 상 위법 여부의 확인이나 구형량 결정을 위한 양형인자의 파악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투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적극 피력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은 제245조의13 제1항을 근거로 검사 면담을 신청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은 개정안 시행 후 어떻게 되나요?**A3.**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르면, ①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90일 내에 종결하되, 그 기간 내 종결하지 않은 경우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다만, 실제로 어떠한 범위의 사건이 경찰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될지는 향후 제정 개정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관련 하위 법령과 실무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가 이미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였거나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한편, ② '경찰이 송치하여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은 공소시효 임박, 사전의 성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즉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사건은 법 시행 후 90일 간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12조). 현재 특검 파견 등으로 인해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되는 사건의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경찰이 기존 사건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사건까지 처리하게 되어 사건 처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현재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항고 또는 재항고가 계속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항고 및 재항고 절차는 공소청 체제에서도 계속 유지됩니다. 공소청법은 현행 검찰청법과 유사하게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에 계속 중인 항고·재항고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소청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종전의 고등검찰청 및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수행하던 직무는 각각 광역공소청 및 광역공소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공소청법 제57조).

한편, 광역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한 결과 항고를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경우, 실제 수사를 담당할 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향후 개정될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하위 법령과 기관 간 업무분장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있는 만큼, 항고나 재항고가 인용될 경우에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법률 검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나요?

A5.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안 제195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의견이 경찰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한 법리 문제나 증거수집의 적법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사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변호인이 경찰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여 달라'고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지도,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 조언을 할 수 있으므로(제245조의10 제3항 후단)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법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습니다.

Q6.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6. 특별사법경찰관 사건도 경찰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변경됩니다.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였으므로(제245조의10 제2항),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수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사건에서도 검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사건의 경우 혐의 유무를 불문하고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에 송부하는 **'전건 송치' 규정이 유지**되어(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를 통해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며, 수사절차상 위법 등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요구(제197조의3) 절차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사건은 '불송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수사요구,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지도, 조언을 포함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도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0 제3항).

Q7. 개정안 시행 전에 검사가 수사한 기록(검사 작성 조서 등)의 증거능력 및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기존 수사지휘는 어떻게 되나요?

A7. 개정안 시행 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검사의 수사 활동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장래의 수사권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시행 이전에 현행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은 원칙적으로 기존 법률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으로 과거 검찰의 수사기록이 일률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행 전에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역시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이 종전의 수사지휘와 다른 결론으로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8. 경찰 등이 보완수사요구 내지 재수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검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8. 개정안은 기존의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외에 적정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규정(제197조의 2 제8항, 제245조의8 제9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변호인이나 사건 관계인으로서의 담당 수사관의 예단이 강하게 형성되었거나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사건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Q9. 검사의 재수사요구 횟수 제한은 없나요?

A9. 종래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의견이 유지되는 경우 재차 재수사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가 유지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245조의8 제7항). 다만, 위 규정이 반복적인 추가 재수사요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 제언 이유에 따르면 위 추가 재수사요구는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수사요구는 최초 1회, 추가 1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Q10.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의 수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10.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명확한 시한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할 뿐이어서 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97조의2 제4항). 다만 검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4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제197조의2 제7항, 제245조의8 제8항)' 및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한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요구(제197조의2 제8항, 제245조의8 제9항)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도 사건 적체로 인해 대통령령('수사준칙')이 정하고 있는 보완수사요구 기한이나 재수사 기한이 준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정하는 기한 내에 충실한 보완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 적체로 인한 수사 지연'을 기한 불준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준다면 단축된 수사 기한이 그 규범력을 가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11. 개정안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관계 규정은 어느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A11. 보완수사요구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을 시행 시 검사가 송치받아 공소청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따라서 법을 시행 전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행 당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정하는 절차와 기한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및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수사요구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을 시행 후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하게 되므로(부칙 제8조), 법 시행 전에 불송치 결정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검찰에 송부된 사건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1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12. 기존에 이의신청 권한이 없었던 고발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이의신청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제245조의 7 제2 항), 기한 제한이 없어 공소시효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던 이의신청에 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제245조의 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는 하나, 고소·고발인으로서의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피의자로서는 장기간 법적 불안정 지위에 있어야 하는 불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축된 이의신청 기한은 개정안 시행(2026. 10. 2.) 후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취지 및 이유의 송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Q13.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위반을 다투는 변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13.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가 의무화되고 그 열람등사도 허용(제220조의 2)됨에 따라, 영장 집행 현장에서 절차 준수와 관련한 적절한 이의 제기 및 의견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영상녹화물을 근거로 적법절차 위반을 다투는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및 증거능력 배제 변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14.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공소청(검찰) 단계에서 변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A14.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그 필요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201조 제7항),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 참여 등 조력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201조 제8항).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이 검사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접보완수사가 금지된 상태에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소청에 피의자 면담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론 기회 보장을 촉구하고 검사에게 불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는 등 신설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15. 고소 또는 고발인을 대리하는 피해자 대리 사건은 법 개정 후 어떻게 달라지며,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5. 불송치처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 방법은 신속한 이의신청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지위가 제한적으로나마 회복된 점은 긍정적이나(제245조의7 제2항), **3개월이라는 엄격한 이의신청 기한**이 신설되었으므로 고소인과 고발인은 불송치 통지 수령 즉시 신속하고 정밀한 불복 논리를 수립해야 합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제245조의12).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인의 자격은 제한적이므로 고발인은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사정 등 이의신청 요건을 함께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전이라도 신설된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고소인/피해자측 대리인은 제245조의13 제2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제1항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경찰 수사의 오류를 직접 피력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연계 또는 별도로 검사 면담을 효과적 변론 기회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이의제기권이 신설되었으므로, 고소인/피해자 대리인은 수사 개시 6개월 경과 시점부터는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하여 담당 수사관 교체 또는 상급관서 심사를 이끌어내는 수사 독려 변론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Q16.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16. 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소청법 시행일과 동일한 2026. 10. 2.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제260조 제1항,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경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해소 방안에 대한 제197조의4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며, 압수수색 집행 시 의무적 녹화를 규정한 제220조의2와 피의자신문 녹음과 관련한 제244조의6은 장비 등 확보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됩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 의무적 녹화 규정은 법률 시행(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집행되는 압수수색부터 적용이 되며,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법률 시행(공포일로부터 1년 경과)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됩니다(부칙 제5조).

Q17.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17. 개정안 부칙 제12조 제1항은 검사의 수사권한에 대한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되더라도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90일간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도 부칙 제6조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공소청법 시행일에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소시효 임박 및 사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일로부터 9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외에 따라 검사가 작성하는 조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여(부칙 제12조 제2항) 증거능력 문제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Yulchon Legal Update

Related Areas

송무

Contact

이시원 변호사

02-528-6147

shiwonlee@yulchon.com

나옥진 변호사

02-528-5255

wjrha@yulchon.com

최인석 변호사

02-528-5970

insukchoi@yulchon.com

임재웅 변호사

02-528-5793

jaewoonglim@yulchon.com

허우영 변호사

02-528-5522

wyhur@yulchon.com

이대식 변호사

02-528-5720

dslee@yulchon.com

김상영 변호사

02-528-5442

sangyeongkim@yulchon.com

김수영 변호사

02-528-6720

sooyoungkim@yulchon.com

권후 변호사

02-528-5161

hkwon@yulchon.com

박시온 변호사

02-528-6697

sopark@yulchon.com